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882호 2014년 8월 29일(금)

공 고

○ 속초시 금고 지정 계획 공고..... 2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 금고 지정 계획 공고

속초시 금고 약정기간이 2014.12.31. 만료됨에 따라 『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』에 의거 차기 속초시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8월 29일

속 초 시 장

1. 지정방법 : 공개경쟁 방법
2. 약정기간 : 4년(2015. 1. 1. ~ 2018. 12. 31.)
3. 신청자격 :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속초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
4. 금고의 수 : 단수금고(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)
5. 신청방법 :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 제안서 등 신청
6. 금고의 주요업무
 -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
 -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
 - 유가증권(수입증지 등)의 출납 및 보관
 - 그 밖의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
7. 신청절차
 - 가. 공고기간 : 2014. 8. 29 ~ 9. 18(20일간)
 - 나. 관계서류 열람 및 신청서 교부

- 기 간 : 2014. 9.3 ~ 9.4(2일) 09:00~18:00
- 장 소 : 속초시청 세무과 세입관리부서(TEL: 639-2162)
- 열람서류 :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서, 2014년 예산서, 관련법령 등
- 신청자료 교부 : 신청서, 요약서, 제안서 작성요령 등 교부

다. 신청서(제안서) 접수

- 기 간 : 2014. 9. 19 (09:00~18:00 근무시간 중)
- 장 소 : 속초시청 세무과 세입관리부서(TEL: 639-2162)
- 부 수 : 11부(원본 1, 사본 10)
- 제출서류 : 신청서, 제안서, 요약서, 부속서류 및 우리시 요구서류
- 방 법 :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.
- 유의사항
 - 신청 금융기관별 제안서 11부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밀봉용 봉투 및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“사용인감계” 및 사용인감(도장) 지참.
 - 평가 항목별로 제안한 내용을 20쪽 이내로 간략하게 요약·정리한 요약서 11부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람.
 - 심사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분야, 세부평가항목 내용별로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라며, 우리시의 요구서류 이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내용은 첨부할 수 없음.
 - 일단 제출된 일체 서류(제안서 등)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안서 등의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고 심사결과 내용 등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.
 - 제출기한이 종료되면 제출된 제안서는 반려 및 보완(수정) 불가함.

8. 평가항목(5개 항목) 및 배점기준(총점 100점)

-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(31점)
- 시에 대한 예금·대출금리 (18점)
-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(20점)
- 금고업무 관리능력(22점)
-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(9점)

※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: 별첨

9. 심사·평가방법

- 「속초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공개로 심의·평가함.
- 속초시 금고를 운영·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서류 심사
- 「속초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」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확인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에 보완서류 제출 및 관계자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음.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은 대표성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여야 하며, 불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금융기관의 책임임.
- 평가·심의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득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정함. 다만, 최고점수 금융기관이 약정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바로 다음 순위 점수를 득한 금융기관을 해당 금고로 지정할 수 있음.
-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.

10. 제안서 제출 등에 따른 비용부담

- 금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(제안서 제출, 약정에 포함된 사항이행, 관련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)은 해당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.

11. 약정체결 및 그 밖의 이행사항

가.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속초시 금고지정 표준약정서에 의거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.

- 신·구금고간 업무 인계·인수는 지정된 금고 책임 하에 수행하고

금회 지정 금고의 귀책에 의한 약정의 포기과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속초시에 배상하여야 함.

- 신·구금고간 업무 인계·인수 시 구(기존)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가 도래한 후 인계·인수할 수 있음.

나.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, 그 밖의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으며, 향후 시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
다. 전산시스템(OCR센터 등)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정상운행할 수 있어야 함.

라.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,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.

12. 기타사항

- 금고지정 제안서 접수 결과 1개 금융기관의 제안서만 접수될 경우 속초시 금고 지정 계획 재공고 후 심사·평가함.
- 그 밖의 추가적인 사항은 속초시 세무과 세입관리담당(☎639-2162, FAX 631-0778)로 문의하시기 바람.

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항 목	세 부 항 목	배 점	비고
	합 계	100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소 계	31	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	(10)	
	- 국외 평가기관	(6)	
	- 국내 평가기관	(4)	
	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(10점)을 평가		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(21)	
	- BIS 자기자본비율 (안전성)	(7)	
	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안전성, 7점)로 평가		
	- 고정이하 여신비율 (건전성)	(7)	
	- 자기자본 이익율 (수익성)	(6)	
	- 원화유동성 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	(1)	
	*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(신협, 농·수·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을 따름		
	* 금융감독원,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		
2.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소 계	18	
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(6)	
	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	(5)	
	다. 시에 대한 대출금리	(4)	
	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(3)	
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	소 계	20	
	가. 관내지점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	(5)	
	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		
	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	(7)	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	(8)	
	소 계	22	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(5)	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(7)	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	(7)	
	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(3)	
	※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		
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	소 계	9	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	(5)	
	나. 시와의 협력사업계획	(4)	
	* “지역사회에 대한 기여”는 실적으로만 평가, “시와의 협력사업”은 계획으로만 평가		

※ 배점부여방법

-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%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%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.

※ 예시(국외평가기관) : 1순위 6.0점, 2순위 5.4점, 최저순위 3.6점

다만, 항목 2(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 및 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)는 순위 간 점수편차를 배점한도의 최대 5%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 배분한다.

※ 예시(정기예금) : 1순위 6.0점, 2순위 5.7점, 최저순위 3.6점